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9.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6.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있는 것은 포함),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2012. 11. 8.에 한 722,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2014. 5. 1.에 한 112,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위 각 처분서(갑 제7~9호증, 을 제9호증의 1·3)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각 처분 일자는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3. 6. 23.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2002. 2. 27.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9. 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다.

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 변동 내역 및 2003. 3. 28. 이후 대표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간	본점 소재지
설립일 ~ 2003. 3. 28.	[redacted]구 C빌딩 2층
2003. 3. 28. ~ 2007. 2. 15.	[redacted]구 D빌딩 5층
2007. 2. 15. ~ 현재	[redacted]시 E빌딩 3층

일시	대표자	직책	F와의 인적관계
2003. 3. 28. ~ 2007. 2. 14	G	대표이사	딸 H의 남편인 I의 형
2007. 2. 15. ~ 2007. 5. 2.	H	대표이사	딸
2007. 5. 3. ~ 2007. 9. 5.	J	대표이사	아들
2007. 9. 6. ~ 2010. 9. 6.	K	대표이사	아들
2010. 9. 7. ~ 2012. 11. 21.	L	대표이사	전 배우자로서 이혼 후 다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2012. 11. 22. ~ 2014. 8. 31.	F	대표이사	본인
2014. 9. 1. ~ 현재	F	청산인	본인

다. 원고는 2003. 3. 7. M, G와 사이에 M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겸 신탁자, G를 수탁자, M을 매도인으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G 명의로 M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8천만 원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3. 4. 3.경 M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직후 G와 사이에 다시 원고가 위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G 명의로 이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로부터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N아파트(지하 1층, 지상 10층)를 신축하고, 2006. 12. 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6. 12. 8. 위 아파트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19세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19세대는 101,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호이다.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902호를 송달장소로 지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6. 원고가 G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 제1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본세 422,400원, 취득세 가산세 84,480원, 농어촌특별세 46,460원을, ㉡ 제2~6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본세 9,860,200원, 취득세 가산세 1,972,04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86,0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98,600원을, ㉢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세 본세 37,332,970원, 취득세 가산세 33,114,340원, 농어촌특별세 4,106,6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결정을 받고, 2013.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2014. 10. 17.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문 송달일인 2014. 10. 21.부터 90일 이내인 2015.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처분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원고가 G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을 G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 2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일자	부동산(이 사건 각 아파트)	부과금액(원)
1	2012. 11. 8.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 901호, 1001호	722,400,000
2	2013. 5. 1.	902호, 1002호	112,200,000

* 피고는 101호에 관하여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을 제1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7호증, 을 제1~4, 11~1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과징금 부과처분서가 2012. 11. 20.에, 제2과징금 부과처분서가 2013. 5. 9.경 각각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2.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등기명의인인 G이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G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취득세 등을 경감받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G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도 모두 원고가 납부하고, 회사 장부에도 그러한 기재해 두었으므로, 원고가 세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인데,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내려졌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취득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지급일인 2003. 4. 3.경,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늦어도 위 사용승인일인 2006. 12. 1.경 각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명의를 위장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문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3항 후단은,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중과세 규정'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2. 27.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고, 위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3. 4. 3.경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인 위 각 토지를 취득하고, 2006. 12. 1.경 역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인 위 각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중과세 규정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20. G 명의로 M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검인을 받고, 그 무렵 G 명의로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중과세 규정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다시 G 명의로 2006. 12. 1. 피고로부터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6. 12. 5.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때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중과세 규정이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G의 명의를 빌려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G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신청을 받았으며, 취득세 등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3. 3. 7. 위 각 토지를 14억 8천만 원에 매수(갑 제4호증)하고도 M으로부터 2003. 3. 20. 다시 제1토지를 2,112만 원에, 제2~6토지를 4억 9,301만 원에 각각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제4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검인받은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되는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위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이고,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별지 1.

처분 목록

순번	세목	금액(원)	관련 부동산
1	취득세(가산세 포함)	506,880	제1토지
	농어촌특별세	46,460	
2	취득세(가산세 포함)	11,832,240	제2~6토지
	농어촌특별세	1,084,620	
3	취득세(가산세 포함)	70,447,310	N아파트 19세대
	농어촌특별세	4,106,6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별지 2.

토지 목록

1. [redacted]구 O 전 32㎡
2. [redacted]구 P 대 36㎡
3. [redacted]구 Q 대 79㎡
4. [redacted]구 R 임야 650㎡
5. [redacted]구 S 대 210㎡
6. [redacted]구 T 대 3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별지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끝)